

## 전환기에 선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황 덕 순\*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 빠졌던 시기이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정부의 재원에 계속 의존하는 현상을 탈피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재원이나 시장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였다. 경영컨설팅과 3년간의 인건비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전문인력 지원은 1년, 3년까지 연장 가능), 7천만 원 한도의 사업개발비 지원(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 저리의 시설 및 운영비 대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최장 4년간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직접지원제도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 확대하였고,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6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을 이를 위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빠르게 늘어나서 2011년 12월 말 현재 644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도 1천 개를 넘어서고 있다. 고용된 인원도 빠르게 늘어나서 2011년 7월 현재 14,0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8,45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제공형이 60%를 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취약계층을 고용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수와 노동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처음에 정부가 의도했던 경제적 자립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광선화(2011)<sup>1)</sup>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9년 말 기준 영업손실 상태인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4분의 3에 이르고(74.6%, 2009년 287개소 중 214개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하더라도 당기순손실 상태인 기업이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33.2%, 286개소 중 95개소). 더구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 3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사회적기업을 빠르게 늘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자립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한계는 세부적인 정책 설계상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꽃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우리 사회에 갖추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사회적기업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적’ 목표를 기업경영 방식으로 추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표를 갖고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고용하거나 무언가를 생산하는 ‘기업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조직과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정부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것은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달리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사람들의 행동양식은 손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가 끌고 갈 수 있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무대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경영방식과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KLI**

1) 광선화(2011), 「지표로 본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과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토론회 발표문, 사회적경제연대회의.